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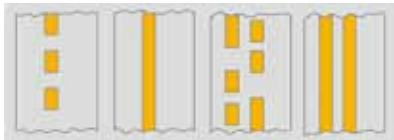
핵심 요약 정리

1 도로교통법의 용어

- **자동차 전용 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중앙선** :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가변 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 자동차 전용 도로



◀ 중앙선

-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 :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 **자전거 도로** : 안전표지, 위험 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길 가장자리 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교차로**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신호기** : 도로 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 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 **안전표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
- **차마** : 차와 우마
 - ① 차 : 자동차, 건설 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 ②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차선



▲ 자전거 횡단도



▲ 횡단보도



▲ 안전지대



- **자동차** :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건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 ①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 ② 건설 기계

※ 승용 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①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②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자동차 등** :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 **긴급 자동차** :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 ① 소방차
- ② 구급차
- ③ 혈액 공급 차량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긴급 자동차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어린이 통학 버스** :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신고한 자동차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초보 운전자**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앞지르기** :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 **일시 정지**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보행자 전용 도로** :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 주차 금지



▲ 서행



▲ 일시 정지

2 운전면허

- **국제 운전면허증**

- ① 발급 대상 :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연습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는 발급 대상이 아님)
- ② 유효 기간 : 교부받은 날부터 1년
- ③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 :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유효



- ④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단,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렌터카는 가능)
- ⑤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내국인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

- ① 1종 대형 :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긴급 자동차, 건설 기계,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 ② 1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건설 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 ③ 2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면허 취득 조건

- ① 1종 대형 :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② 1·2종 보통 : 만 18세 이상인 자
- ③ 신체 검사 기준 : 시력(1종은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5 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 이상), 색채 식별(적·녹·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예시)

- ① 2년 :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② 5년 :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및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 발급 절차

- ① 운전면허 시험 과목 :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등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의 지식, 자동차등의 관리 방법과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② 도로 주행 시험 : 교통사고 야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은 1회의 경우라도 실격 처리한다. 도로 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나야 다시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법규 위반으로 정지 처분이나 그 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사람 등은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습 운전면허

- ① 유효 기간 :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 ②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 면허 발급 및 갱신

- ①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게 한다.
- ② 운전면허의 효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③ 운전면허증의 갱신 :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간이다.
- ④ 정기 적성 검사 : 제1종 운전면허는 10년마다, 제2종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
- ⑤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



3 자동차의 관리 · 등록

● 출발 전 점검하기

- ① 주변 점검 사항 : 타이어 마모상태, 전 · 후방 장애물 유무
- ② 출발 전 엔진 룸을 열어서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 : 엔진오일의 적정량

● 타이어

- ① 타이어가 마모 한계에 이르면 위험하므로 마모 한계 전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
- ② 일정한 주행 거리를 사용한 타이어는 마모 상태를 확인한 후, 앞뒤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 자동 변속기 오일 : 엔진 시동을 켜 상태에서 점검한다.

● 냉각 장치

- ① 냉각수 부족 시 언제나 보충해야 한다.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보충할 때는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 ② 라디에이터가 과열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 전기 장치 : 퓨즈는 전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 엔진 온도 게이지

- ① 엔진 온도 게이지는 C와 H 사이 상태가 정상이다.
- ② 엔진 온도 게이지가 H 상태에 가까우면, 엔진 오일, 냉각수, 팬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점검을 받는다.

●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 ① 비사업용 : 일반용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 ② 운수 사업용 :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 ③ 이륜자동차 번호판 :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해야 한다.

● 책임 보험 :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비

- ① 화재 대비 : 차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둔다.
- ② 불법 부착 장치 :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경광등, 사이렌
- ③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 : 자동차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운전석 좌우 유리창은 40% 이상

● 검사

- ① 정기 검사의 기간 :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②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기간 : 4년

4 운전자의 자세

● 운전자의 운전 행동의 과정 : 확인(Identify) → 예측(Predict) → 결정(Decision) → 조작(Execute)

●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

● 운전 중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

- ① 사전에 목적지의 경로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운다.



② 운전 중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운전 중 집중력**

- ① 휴대전화 통화, 라디오 등 음향 기기 조작을 삼간다.
-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 ③ TV/DMB는 뒷좌석 승차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

● **운전자의 마음가짐**

- 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 : 양보심, 인내심
- ②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을 한다.

5 음주 · 피로 운전

● **약물 복용** : 마약 등의 약물 복용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①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 ②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공주 거리가 길어진다.

● **졸음운전**

- ①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차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진다.

● **음주 운전**

- 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 ②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대상이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 ② 공주 거리가 길어진다.

●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

-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 ②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 ③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 운전은 벌점 100점(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과 형사처벌을 받는다.



6 보행자 보호

● 운전자의 준수 사항

- ① 운전자는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 ②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 ③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일시 정지한다.
- ④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서행으로 운전한다.

● 차량의 보도 통행 방법

- ①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 :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 ②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 :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 ③ 길가의 건물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한다.

● 보행자의 통행 방법

- ①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 ③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한다.
- ④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 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⑥ 도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한다.
- ⑦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 전용 도로

- ①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 보행자 전용 도로

7 차마의 통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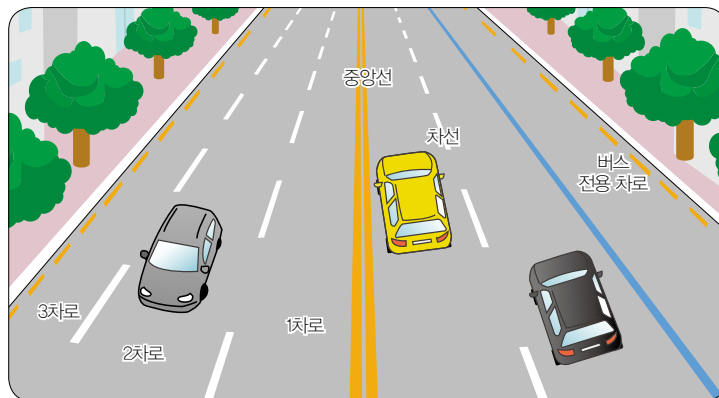
● 차마의 통행 방법 :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한다.

●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② 도로의 우측 부분이 협소하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하는 경우(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차선

- ① 백색 실선의 차선 : 진로 변경 제한선
백색 점선의 차선 : 진로 변경 가능
- ②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 차선과 차로

- ③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 :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으나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 신호기

- ①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②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③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④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서행을 해야 할 장소

-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②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앞지르기

- ①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 ②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황색 실선 구간
- ③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할 수 없다.
- ④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앞지르기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 한다.
- ⑥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 ⑦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 앞지르기 금지

● 진로 변경

- ①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 :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

※ 진로 변경 시에는 백색 점선 구간에서,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급진로 변경,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은 위험한 운전 행위이다.



- ② 진로 변경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커브 길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진로 변경 시 신호 :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 ④ 후속 차 주의 : 후속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후속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를 늦추어 뒤차를 먼저 통과시킨다.

● 유턴

- 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 :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 ②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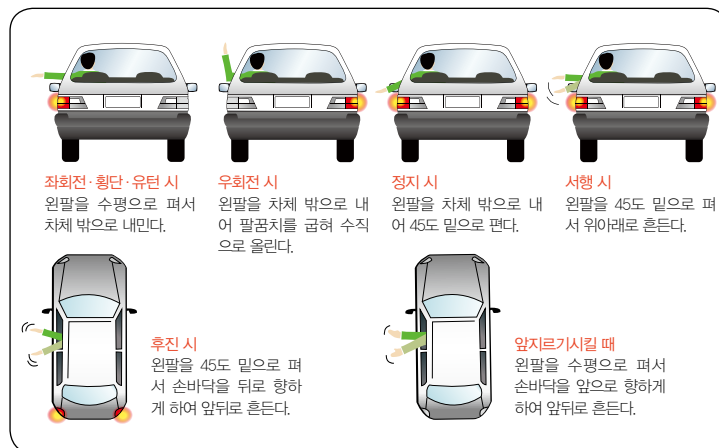


▲ 유턴 금지

- 방향지시등 :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 수신호

- ① 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 ② 우회전 :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 수신호

-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 :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한 속도

- ① 법정 운행 속도보다 안전표지가 지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
- ②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따라야 한다.
- ③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 규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 ④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 차간 거리

- ① 안전거리 :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도로 주행 시 확보해야 함)
- ② 공주 거리 :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진행한 거리
- ③ 정지 거리 : 앞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 정지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 과로 및 음주 운전 시, 차량의 중량이 무겁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심할수록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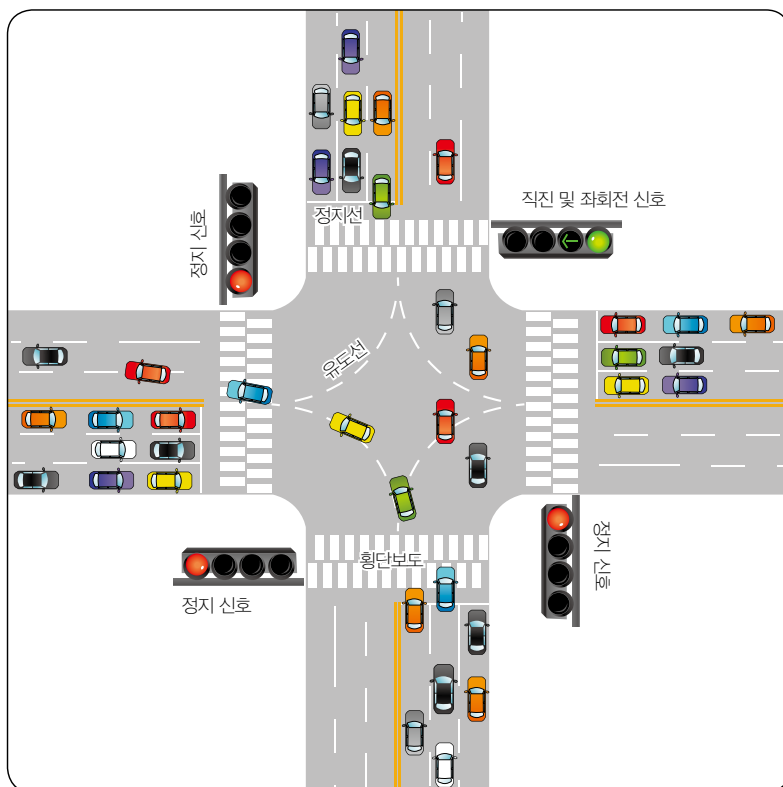


- **공동 위험 행위**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예 : 3대의 자동차와 1대의 이륜차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천천히 진입
- **양보 표지** : 양보 표지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양보

8 교차로



▲ 교차로

● 교차로에서 좌회전

- ① **좌회전** :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중앙선을 따라(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한다. 방향지시기를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켜고 진행한다.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 유도선 :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 점선으로 한 노면 표시

- ② **비보호 좌회전** : 전방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다. 우회전 차량 및 같은 방향으로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하며 좌회전해야 한다.
- ③ **1·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 : 승용차는 1·2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은 2차로를 이용하여



◀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할 수 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 ① 우회전 :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미터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차량 우측 뒤쪽의 교통을 확인 하면서 우회전한다. 노면에 양보 표시가 있으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횡단보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 ③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현상 : 내륜차(內輪差) 현상

※ 내륜차 :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

- **딜레마 존** :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야 할지 아니면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

● 교차로 금지 사항

- ① 교차로 내 정체 시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정체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명 ‘꼬리 물기’ 행위를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다.
- ② 주정차 및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 교통정리(신호등)가 없는 교차로

- ① 우선권 : 선진입 차 - 폭이 넓은 도로의 차 - 우측 도로의 차 - 직진 및 우회전 차량

※ 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했을 때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다.

- ②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면서 동시에 서행 장소임
-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 서행하여야 한다.

● 교차로 내 보행자 보호

-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 보행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 회전 교차로

- ① 회전 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곳 : 신호 연동이 필요한 구간 중 신호 교차로이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곳
- ②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회전 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회전 교차로

● 철길 건널목

- ①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 ②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③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 철길 건널목



9 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 ① 운전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 급감속을 하지 않는다.
- ②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고속도로에서는 고장 차량 표지판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 ④ 고속도로 통행 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긴급 정차 시
- ⑤ 고속도로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차량 : 고속도로 본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

●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 ① 진입 방법 :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천천히 가속하여 진입한다.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 가속 차로 :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 ②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 ③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해당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나올 때

- ① 출구 가까운 곳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피하고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 한 번에 한 차로씩 변경하여 출구 쪽 차로로 이동한다.
- ②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하여 진출한다.
- ③ 출구 지점을 지나쳐 버린 경우 : 절대 정지하거나 후진해서는 안 되고 다음 출구에서 나가도록 한다.

10 긴급 자동차

● 긴급 자동차 특례 적용

- ① 긴급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긴급 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단,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등은 예외이다.)
- ② 일반 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할 때 긴급 자동차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야 한다.

●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

- ① 휴대용 전화 사용
- ②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주행
- ③ 좌석 안전띠 미착용
- ④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의 좌측 부분 통행

●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 ①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함이 원칙이다.
- ② 고속도로 진입 시 뒤에서 긴급 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 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 ③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측으로 피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방통행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도 피양이 가능하다.
- ④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11 어린이 보호

● 어린이 통학 버스

- ① 어린이 통학 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② 어린이 통학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 어린이 통학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 어린이 통학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 어린이 통학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지나간다.
- ④ 어린이 통학 버스가 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주행 중일 때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앞지르기한 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 어린이 보호 구역

- 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 ②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할 때 행할 수 있는 조치 : 차의 통행 제한 및 금지, 주·정차 금지 등
- ③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이다.)
- ④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 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 ⑥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주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예 : 제한 속도를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 30점)
- ⑦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주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중된다.(예 :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 원)



▲ 어린이 보호

●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 ① 어린이는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건너편 도로에서 어머니가 부르면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뛰어가는 경향이 있다.
- ③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앞만 보고 뛰는 경향이 있다.

● 일반 도로에서의 어린이 보호

- 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한다.

●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① 어린이에 대한 구호 조치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2 노인 보호

● 노인 보호 구역

- 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 노인 보호



- ②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 노인 복지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 체육 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
- ③ 노인 보호 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 :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

● 일반 도로에서의 노인 보호

- 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일시 정지하여 노인이 횡단한 후 통과한다.

※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 ②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 ③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

● 고령자의 특징

- ① 반사 신경이 둔하다.
- ② 돌발 사태에 대응력이 미흡하다.
- ③ 시력 및 청력 약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13 주차 · 정차

● 주차와 정차의 구분

- ①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②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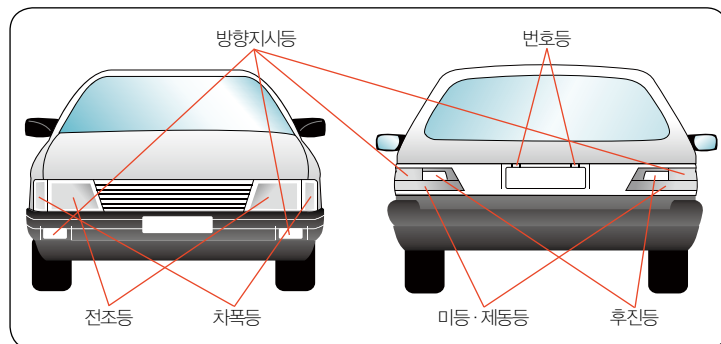
※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정차 방법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하는 이유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 ① 내리막길에서는 연석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하고, 오르막길에서는 연석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석이 없는 경우 앞바퀴의 방향을 보도 쪽으로 유지한다.
- ②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우고 가능하면 킥목을 사용한다.
- ③ 수동 변속기 차량이 내리막길에 주차할 때 :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은 보도 측으로 돌려놓는다.
- ④ 자동 변속기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할 경우 : 기어를 P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다.



▲ 차의 등화

-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는 등화 : 미등 및 차폭등

●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①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③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④ 버스 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의 곳(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하는 것은 예외)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정차·주차 금지

※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 :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 고속도로에서의 주차·정차

- ① 갓길은 긴급 차량의 통행로이므로 주차하면 안 된다.
- ② 고속도로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을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 휴식, 전화 통화 등의 목적으로 갓길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승하차

- ①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 ②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특히,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14 특별한 도로 · 야간 운전

● 빗길

- ①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빗길에서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이다.
- ② 비가 오는 날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 : 평상시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더 많이 유지한다.
- ③ 빗길 중앙선 침범 및 도로 이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과속이다.
- ④ 빗길에서 급제동했을 때 : 마찰력이 저하되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진다.
- ⑤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 빙판길

- ①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 ②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누어 밟는다.

● 안개 낀 도로

- ①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운전한다.
- ②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도로

- ①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 ②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지고 차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서행하는 것이 좋다.

● 경사로

- ① 내리막길 주행 시 :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 ②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친다.

※ 베이퍼 록(Vapor lock) :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 ③ 오르막길 : 급진로 변경이나 급정거, 급가속 등은 피하고 저속 차량의 경우 차량 진행을 위하여 하위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 ④ 언덕길의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 중일 때 : 내리막을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서행으로 주변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 급커브 길 : 급커브 길 전의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 강풍이나 돌풍 지역

- ① 절대 감속해야 하며 안전 운전 집중하여야 한다.
- ② 핸들을 양손으로 꼭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 ③ 산악 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 야간 운전

- ① 야간은 주간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므로 감속 운전한다.
- ② 현혹 현상 : 야간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한 눈부심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현상. 주행 중 잦은 현혹 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다. 눈부심을 피하려면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 ③ 뒤차의 전조등 불빛이 후사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때 : 후사경을 약간 틀어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④ 증발 현상 :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

- ①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③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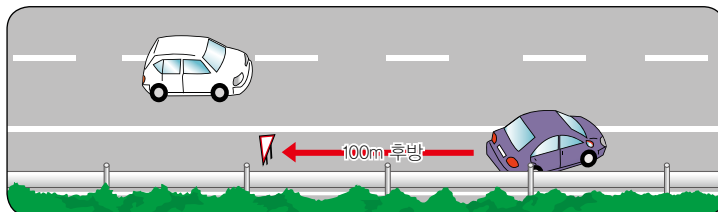
15 고장 · 사고

● 주행 중 차량 고장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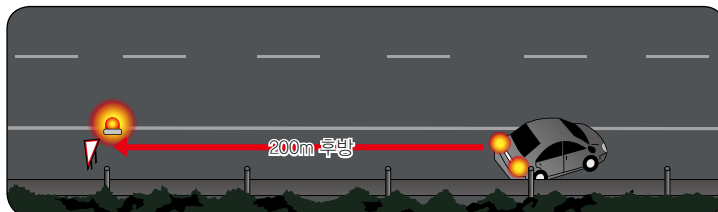
- ① 후속 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용 삼각대를 설치한다.
- ② 타이어 펑크 시 :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안전 조치 후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한다.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 ① 다른 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갓길 등으로 차량을 이동한다.
- ② 고장 차의 보닛 또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 차임을 표시한다.
- ③ 만약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 ③ 차량 내부에 있거나 직접 나가서 수신호를 할 경우 후속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야간에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적색 섬광 신호의 설치 기준 :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낮에 고장 표지 설치하기



▲ 밤에 고장 표지 설치하기

● 돌발 상황 대처

- ① 중앙선을 넘어오는 반대 방향의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 즉시 감속과 함께 길 가장자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을 경우 : 앞지르기를 중지하고 주행 중이던 차로로 복귀한다.

●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에서의 제동

- ① 브레이크를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밟으면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 ② 비상 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지진이 발생할 경우

- 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한다.
- ②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 ① 위험 물질 수송 차량과 충돌한 경우엔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 ② 화재가 발생했다면 부상자를 적절하게 구호해야 한다.



●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 ①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 ②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 ③ 터널 밖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차량은 최대한 측벽 쪽으로 정차시킨다.
- ④ 차를 두고 대피할 경우는 키를 꽂아 두고 이동한다.
- ⑤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등을 따라 이동한다.

●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 ①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 ②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

- ① 고속 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 ②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 ① 커브 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 ② 노면이 미끄러울 때

● 이동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

- ①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 ③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띠

- ①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착용 방법 :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한 후 느슨하게 매지 않는다.
- ③ 효과 : 충격력을 감소하여 치명적 부상을 막아 주며, 바른 운전 자세를 유지시켜 운전 피로를 적게 해 준다.
- ④ 승용차에 유아를 탑승시킬 때 : 유아용 보호 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킨다.



▲ 안전띠 매기

● 머리 받침대 :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한다.

● 자동차 승차 인원

- ①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

- ① 앞차와 정지 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② 앞차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출발 전 후사경을 통한 안전 확인 방법**

- ① 후방의 상황을 가급적 넓게 볼 수 있도록 실내 후사경을 조정한다.
- ② 후사경을 통한 후방 차량 움직임 파악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 ① 119 및 112에 신고하고 상대 운전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현장을 표시하고 사진 촬영한다.
- ②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는 당사자 간에 사고 내용과 연락처를 각자 자필로 기록하여 교환한다.
- ③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사항 :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 ④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 공무원 :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에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긴급 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승차자로 하여금 현장 조치 또는 신고 등을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응급 처치**

- ① 교통사고 목격 시 : 즉시 정차 → 사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 ② 부상자 발생 시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때에는 가장 먼저 가슴 압박을 실시한 후, 기도 확보,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한다.
- ③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 부상자에게 말을 걸어 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보거나, 팔을 꼬집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④ 출혈이 경미할 때는 상처에 깨끗한 거즈나 헝겊을 대고 손으로 꼭 눌러 압박한다.
- ⑤ 교통사고 부상자의 이동 : 부상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부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금물이다. 함부로 옮기지 말고 즉시 119 등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화재, 산소 부족, 심한 교통 체증, 익수, 악천후, 붕괴 직전의 건물, 감전 위험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시킨다.

16 교통 법규 · 처벌

● **운전면허 취소**

- ①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
- ②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범칙금 미납**

- ①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 ② 2차 납부 기간 경과 시 :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과태료 미납 : 부과 금액의 최저 5퍼센트에서 최고 77퍼센트의 가산된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 시에는 범칙금과 달리 별도의 벌점 처분은 없다.**

● **자동차 등 대(對)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벌점 :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 주차 위반

- ① 주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되고, 미납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 ② 주차 위반 차량의 경우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는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 : 누구든지 처벌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 「교통사고특례법」의 예외 조항 :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 11가지

- ① 속도위반(제한 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사고)
- ② 중앙선 침범
- ③ 신호 위반
-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⑥ 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 상의 사고
- ⑦ 무면허 운전
- ⑧ 음주 운전
- ⑨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⑪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전용 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화물 자동차의 적재 안전 기준

- ① 길이 :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 ②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③ 높이 : 지상으로부터 4미터

● 속도 제한

- ①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 : 최고 속도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 ② 자동차 전용 도로 :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 ③ 서해안 고속도로 : 최고 속도 매시 110킬로미터
- ④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 속도 매시 80킬로미터
- ⑤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의 제한 속도 : 최고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① 승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고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르다.



17 자전거

● 전방에 자전거가 가고 있을 때

- ①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② 앞지르기할 때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전거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 ③ 자전거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 : 자전거가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준다.
- ④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 :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자전거가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진행한다.

● 자전거 통행 방법

-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

18 친환경 경제 운전

● 친환경 경제 운전 : 연비가 높은 운전,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전

- ① 경제속도로 주행한다.
- ② 급제동, 급가속, 급출발을 피하고 정속 주행한다.
(불필요한 브레이크 사용을 줄여야 한다.)
- ③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한다.
- ④ 타이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한다.
- ⑤ 자동차 무게를 가볍게 한다.
(연료를 가득 주유하지 말고, 불필요한 짐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⑥ 에어컨은 필요 시만 켤 수 있도록 하며, 처음에 켤 때는 고단으로 켜 후 저단으로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기 :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운전 방법

● 자동차의 배기가스 색이 흰색인 경우 :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되는 경우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 자동차 연료 중 대기 오염 발생이 많은 순서 : 휘발유 - LPG - 전기 연료